HANULCHE × 센트레빌 CENTREVILLE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새나루마을 2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일원)
■ 공급대상 : 분양주택 318세대 (59㎡ 218세대, 64㎡ 40세대, 67㎡ 60세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분양 상담전화(1800-091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지로서 ① 85㎡이하 국민주택과 ② 85㎡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같은 블록이라 하더라도 청약신청 시 ① 85㎡이하 국민주택과 ② 85㎡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동시분양 하는 아래 3개 주택 중 1개 주택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① L3블록(85㎡이하), ② M5블록(85㎡이하), ③ M5블록(85㎡초과)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포함) 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복청약 시 처리방법
- ● 같은 단지 (주택관리번호가 같은 경우)
  - ①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내역 무효처리)
  - ②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부적격처리)
  - ③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부적격처리)
  - ④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내역 무효처리)
  - ⑤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시 둘 다 부적격처리되나,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고 일반공급 당첨은 부적격 처리)
  - ⑥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부적격 처리)
- ● 다른 단지 (주택관리번호가 다른 경우)
  - ①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본인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각각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 ② 본인이 85㎡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 세대원이 85㎡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 중복청약 불가 (당첨 시 둘 다 부적격처리)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11(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85㎡이하 국민주택으로 2019000654, 공고문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sejong.ihanulch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9.07.12(금)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번지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sejong.ihanulche.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한 85㎡이하 국민주택과 85㎡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85㎡이하 국민주택과 85㎡초과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85㎡이하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됨)하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85㎡초과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면적 구분없이 특별공급은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에게만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8.07.1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거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재당첨제한 기간 85㎡이하 국민주택은 3년, 85㎡초과 민영주택은 1년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부기등기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07.25.)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되며,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 소득 요건

구분	85㎡이하 국민주택	85㎡초과 민영주택
신청가능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신청자격	특별공급								
	이전기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이하	85㎡초과	85㎡이하
입주자저축	불필요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예치금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예치금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자산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초과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초과
입주자저축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예치금 이상)	필요 (2순위)	필요 (2순위)	필요 (2순위)
자산요건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 노부모부양,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19.07.16.(화)		2019.07.17.(수)	2019.07.18.(목)	2019.07.25.(목)	2019.07.26.(금) ~ 2019.07.29.(월)	2019.08.12.(월) ~ 2019.08.14.(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접수 (10:00 ~ 16:00)	(10:00 ~ 16:00)
장소	■ 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http://apt.housing.or.kr)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p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견본주택 - 예비입주자 추후 고지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번지)

※ 당첨자 조회방법 : 개별조회(PC : www.apt2you.com,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제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 업무는 한국주택협회에서 실시하며,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제14호,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3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통합 주택형 유의사항

▣ 통합(청약) 주택형 안내

통합 주택형	59.7300A	59.8600B	64.5800A	67.5600A
해당 타입	59A	59B1, 59B2	64A1, 64A2	67A

■ 본 사업지는 신청(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동일 주택형 내 해당 타입의 구조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 내 일부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한 타입에 대하여 공급금액 차등을 주었으므로, 신청(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외관 입면특화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해 시공하는 부분으로 당사에 일체 이의 및 변경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주택형	해당 타입	세대수	설계 관련 내용
59.8600B	59B1	63	기본형
	59B2	14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
64.5800A	64A1	20	침실 1, 2 전체 확장형
	64A2	20	침실 1, 2 전면 오픈 발코니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이형타입 전시관 또는 분양 안내물(홈페이지, 팸플릿 등)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는 공급안내문 등의 유인물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통합주택형 내 해당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3블록 : 공동주택 지하1층, 20층(최고), 6개동 85㎡ 이하 국민주택 318세대 (특별공급 281세대, 일반공급 37세대)

2. 공급대상

블록	모델번호	통합 주택형	구분	해당 타입	공급면적 주거전용	공급면적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계)	공유대지면적(㎡)	계	이전기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일반공급	최고층수	최하층 우선배정세대	입주예정시기
합 계											318	158	15	47	31	6	24	37	-	22	
L3블록	2019000654-01	59.7300A	국민주택	59A	59.7300	22.7534	8.8135	34.9423	126.2392	57.6807	141	70	7	21	14	3	11	15	20	10	'21.12 (예정)
	2019000654-02	59.8600B		59B1	59.8600	22.8029	8.8327	35.0184	126.5140	57.8063	77	38	3	11	7	1	5	12	20	5	
				59B2	59.8600	22.8029	8.8327	35.0184	126.5140	57.8063											
	2019000654-03	64.5800A		64A1	64.5800	24.6009	9.5291	37.7796	136.4896	62.3643	40	20	2	6	4	1	3	4	10	4	
				64A2	64.5800	24.6009	9.5291	37.7796	136.4896	62.3643											
	2019000654-04	67.5600A		67A	67.5600	25.7361	9.9689	39.5229	142.7879	65.2421	60	30	3	9	6	1	5	6	20	3	

※ 주택형별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통합 주택형		59.7300A	59.8600B	64.5800A	67.5600A	합 계
해당 타입		59A	59B1, 59B2	64A1, 64A2	67A	
이전기관 종사자 등		70	38	20	30	158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1	-	-	-	1
	국가유공자	4	2	1	2	9
	장애인	3	-	-	-	3
	북한이탈주민	1	-	-	-	1
	10년이상 복무군인	1	-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	1
	우수선수·기능인	-	1	1	-	2
	공무원	-	-	1	-	1
	의사상자	-	-	-	1	1
	납북피해자	-	-	-	1	1
	다문화가족	-	-	-	1	1
	체육유공자	-	-	-	-	-
	입주기업 종사자	1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해지역(50%)	4	2	1	2	9
	기타지역(50%)	3	1	1	1	6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해지역(50%)	11	6	3	5	25
	기타지역(50%)	10	5	3	4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해지역(50%)	7	4	2	3	16
	기타지역(50%)	7	3	2	3	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해지역(50%)	2	1	1	1	5
	기타지역(50%)	1	-	-	-	1
합 계		126	65	36	54	281

4.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동별	층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 1회(10%) '19.11.15	2회(10%) '20.03.16	3회(10%) '20.07.15	4회(10%) '20.11.15	5회(10%) '21.03.15	6회(10%) '21.06.15	잔금 입주시(30%)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입주시(30%)
059.7300A	59A	201동 1호 202동 2호 203동 1호 205동 1호, 3호 206동 1호, 2호 206동 4호~6호	1층	6	253,80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1,140,000	55,000,000
			2층	6	258,800,000	25,880,000	25,880,000	25,880,000	25,880,000	25,880,000	25,880,000	25,880,000	22,640,000	55,000,000
			3층	10	263,800,000	26,380,000	26,380,000	26,380,000	26,380,000	26,380,000	26,380,000	26,380,000	24,140,000	55,000,000
			4층	10	268,80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25,640,000	55,000,000
			5층이상	109	273,800,000	27,380,000	27,380,000	27,380,000	27,380,000	27,380,000	27,380,000	27,380,000	27,140,000	55,000,000
059.8600B	59B1	201동 2호 202동 3호 203동 2호 206동 3호	1층	4	254,20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1,260,000	55,000,000
			2층	4	259,20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2,760,000	55,000,000
			3층	4	264,20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4,260,000	55,000,000
			4층	4	269,20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5,760,000	55,000,000
			5층이상	47	274,20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260,000	55,000,000
	59B2	205동 2호	1층	1	254,20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5,420,000	21,260,000	55,000,000
			2층	1	259,20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5,920,000	22,760,000	55,000,000
			3층	1	264,20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4,260,000	55,000,000
			4층	1	269,20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6,920,000	25,760,000	55,000,000
			5층이상	10	274,20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260,000	55,000,000
064.5800A	64A1	203동 3호, 4호 204동 1호, 2호	1층	2	280,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4,000,000	-
			2층	2	285,0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85,500,000	-
			3층	2	290,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
			4층	2	295,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88,500,000	-
			5층이상	12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00	-
	64A2	203동 3호, 4호 204동 1호, 2호	1층	2	280,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4,000,000	-
			2층	2	285,0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85,500,000	-
			3층	2	290,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
			4층	2	295,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88,500,000	-
			5층이상	12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00	-
067.5600A	67A	201동 3호 202동 1호, 4호	1층	3	294,10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88,230,000	-
			2층	3	299,100,000	29,910,000	29,910,000	29,910,000	29,910,000	29,910,000	29,910,000	29,910,000	89,730,000	-
			3층	3	304,10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30,410,000	91,230,000	-
			4층	3	309,100,000	30,910,000	30,910,000	30,910,000	30,910,000	30,910,000	30,910,000	30,910,000	92,730,000	-
			5층이상	48	314,10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94,23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코오롱글로벌(주)과 동부건설(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공동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코오롱글로벌(주) / 동부건설(주)]이며,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주택형별, 층별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0㎡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상기 주택도시기금은 입주 시 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채무인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 지정계좌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수용받은 해당 주택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입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융자금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공급대금	계약금	우리은행	1005-003-735465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 상기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대금 및 플러스옵션(시스템에어컨 등)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분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1차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5.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통합 주택형	해당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19. 11. 15	잔금(80%) 입주지정일
59.7300A	59A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59.8600B	59B1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59B2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64.5800A	64A1	11,400,000	1,140,000	1,140,000	9,120,000
	64A2	11,400,000	1,140,000	1,140,000	9,120,000
67.5600A	67A	11,400,000	1,140,000	1,140,000	9,120,000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계약금	우리은행	1005-403-735168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및 플러스옵션(시스템에어컨 등)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1차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세대별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각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가구류 등 마감재 및 사이즈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피커, TV),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플러스 옵션(추가 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통합 주택형	해당 타입	선택	설치 위치	실내기	공급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19. 11. 15	잔금(80%) 입주지정일
59.7300A	59A	기본	안방+거실(주방)	2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전실	안방+거실(주방)+침실1+침실2	4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59.8600B	59B1, 59B2	기본	안방+거실(주방)	2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전실	안방+거실(주방)+침실1+침실2	4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64.5800A	64A1, 64A2	기본	안방+거실(주방)	2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전실	안방+거실(주방)+침실1+침실2	4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67.5600A	67A	기본	안방+거실(주방)	2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전실	안방+거실(주방)+침실1+침실2	4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장비와 브랜드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냉난방장비 설치)
※ 에어컨 옵션 선택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된 실에는 냉매배관 및 박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